

영등포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3.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40호로 2018년 2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언어권리 신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4조)
- 라.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지원 규정(안 제5조~제6조)
- 마. 포상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3조, 제71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 제16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및 복리를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이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언어권리 신장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과, 수화언어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화언어 통역 지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공적이 큰 구민 표창 등을 규정함.

○ 2018년 1월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청각,언어 장애인은 1,970명으로 전체 등록된 장애인수 14,333명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그동안 이들은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으로 농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6.2.3.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여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등 다양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정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실효성 있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사회 참여권 등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서울시 자치구별 청각·언어 장애인 현황('18. 1. 31. 현재)

(단위: 명)

연번	자치구	등록 장애인수	언어,청각 장애인 수	연번	자치구	등록 장애인수	언어,청각 장애인 수
1	영등포구	14,333	1,970	14	서대문구	12,622	1,660
2	종로구	6,051	772	15	마포구	13,238	1,698
3	중구	5,681	677	16	양천구	17,197	2,383
4	용산구	8,089	1,025	17	강서구	28,694	3,742
5	성동구	11,754	1,385	18	구로구	17,288	2,194
6	광진구	12,530	1,523	19	금천구	11,070	1,450
7	동대문구	15,886	1,965	20	동작구	14,540	2,047
8	종랑구	20,008	2,175	21	관악구	20,092	2,431
9	성북구	17,514	2,149	22	서초구	10,759	1,340
10	강북구	17,358	2,209	23	강남구	15,566	1,733
11	도봉구	15,165	1,891	24	송파구	19,804	2,189
12	노원구	27,403	3,272	25	강동구	17,384	1,988
13	은평구	21,320	2,840	총합계		391,346	48,708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현황('18. 1. 31.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뇌전증
계	14,333	6,895	1,598	1,850	120	838	1,518	162	444	585	33	53	72	18	115	32
남	8,535	3,984	982	1,074	87	531	923	135	245	362	23	39	52	12	70	16
여	5,798	2,911	616	776	33	307	595	27	199	223	10	14	20	6	45	16

관 련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8.4., 2015.12.29., 2016.2.3.>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 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